

제 582 호
1076.12.2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정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 - 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 - 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1075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3
- 제 1076 호 :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 3

◎ 훈 명

- 제 464 호 : 서울특별시장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규정중개정규정..... 4

◎ 고 시

- 제 336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5
- 제 338 호 :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일부변경및지적승인..... 5
- 제 339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및지적승인 6
- 제 340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 7
- 제 341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시행허가일부변경 7
- 제 342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 8
- 제 343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일부변경및지적승인 9
- 제 344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결정및지적승인 9
- 제 345 호 : 도시계획 (재개발지구) 일부변경 결정및지적승인.....10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46 호 : 동청사위회 변경 고시	11
제 34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지적승인	12
제 348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 실시계획인가	13
제 349 호 : 동청사위회 변경 고시	14
제 35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4
제 351 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및 지적승인	14
공 고	
제 30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15
제 30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자지적승인	17
제 306 호 :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17
제 307 호 : 동업자조합설립인가	18
제 309 호 :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19
제 310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활생산지정업체대체 지정공고	20
제 313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 공람공고	21
제 314 호 : 교육공무원 공로퇴직수당 지급공고	21
제 316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에 정지지정공고	22
제 317 호 : 태평로 2 가제 2 지구재개발사업완료공고	22
제 318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 정지지정공고	27
제 320 호 : 77년도서울특별시자농차운전면허시험실시공고 ...	28
제 321 호 : 불량공산품판매진열금지및수거명령	29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12.28

◎ 서울특별시조례제 1075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각종 특수근무수당은 영에서 정한 지급 상한액을 그 지급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 8280 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 12. 28

◎ 서울특별시조례제 1076 호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원 국내여비지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계약직원규정 제 9 호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실비면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국내여비정액) 지방계약직원의 국내여비정액은 "별표"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3 조 (준용규정) 지방계약직원의 국내여비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서울특별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동조례 제 4 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여 비 지 급 기 준 표					
등	급	지 급 액			
1	급 연구원기사 및 의사	서울특별시 여비조례 별표 2에 의한 제 3호 잡류해당자에 상당하는 여비			
2	급 연구원기사 및 의사	서울특별시 여비조례 별표 2에 의한 제 3호 잡류해당자에 상당하는 여비			
3	급 연구원 및 기사	서울특별시 여비조례 별표 2에 의한 제 4호 잡류해당자에 상당하는 여비			
<p style="text-align: center;">훈 령</p> <p>서울특별시 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6.12.28</p> <p>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p>		<p>◎ 서울특별시훈령제 464 호</p> <p>서울특별시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특별시 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순 위	명 칭	위 치	해 당 청	관 할 청	한 제
12	양 화 교	안양천 (공항로)	영 동 포 구 양 서 출 장 소	양 서 출 장 소	교 량 외 전 부
13	오 목 교	안양천 (오목로)	"	영 동 포 구	"

별표 1 중 '7. 하천'란에 제 1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순위	명 칭	위 기	해 당 청	관 할 청	한 계
11	안양천	영등포구와 양서출장 소와의 경계	영 등 포 구 양서출장소	영 등 포 구 양서출장소	안양천우안 안양천좌안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6 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97 호 (76.12.9) 로 일부 변경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지적 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지적승인 조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정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장

변 경 구 분	위 치	면적(㎡)	높이
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	성동구, 광장동 22 번지 일대	34,765	

(도면상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8 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일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

하고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 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p>		<p>제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12.13 서울특별시 장</p>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철산유수지	영등포구 구로동 689 번지	62,300			
변경	"	"	52,800			
<p>※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339 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p>		<p>외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2.14 서울특별시 장</p>				
<p>1. 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하수 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 적승인 하얏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와 13조의 규정과 행정 권한 위 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p>		<p>○ 도시계획 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적 승인</p>				
구분	시설명	규모	연상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하수도	B=2.5-3M	415M	길음동 575-69	길음동 633-1	
<p>※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p>						

◎ 서울특별시고시제 340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일부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2 호 (76. 6.17) 로 도시계획 시설(운동장) 결정된 운동장 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 13조와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종로구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1976.12.1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설(운동장)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운 동 장	종로구 구기동 151의 2 필지	6,159	
변 경	〃	종로구 구기동 151의 3 필지	6,255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41 호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시행허가일부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6 호 (76. 6.26) 로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시행허가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조 및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종로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1976.12.16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기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51의 2 필지
 변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51의 3 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 3. 면적 및 규모 : 기정 6,159㎡
 변경 6,255㎡
- 4. 시행자 주소, 성명 : 중구 중부로 4가 125-1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박승락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6. 6.26
 나. 준공예정일 : 1976.12.31
- 6. 위치 및 계획 평년도 : 별첨 (도면생략)
- 7. 공사 실제 도면 :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42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3조와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12.2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운동장 (정구장)	잠실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고 1부락	3,372㎡ (1,020)평	

※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43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일부변경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일부 변
 경하고 지적승인 하엿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행정 권
 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12.2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설 (학교) 결정,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학 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중로구 수송동 80 의 4 필지	12,217 (3,694명)	
"	학 교 (보성여자고등학교)	용산구 용산동 2 가 1의 1123 호	9,701 (2,934,4명)	
"	학 교 (동일중, 여자고등학교)	영등포구 시흥동 산 100호 4	39,779 (12,033명)	
변 경	학 교 (성정여자고등학교)	서대문구 갈현동 228 의 12 필지	13,521 (4,090명)	추 가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함.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44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 시설 (시장)
 을 다음과같이 신설,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하엿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행정 권

한 위임 위탁에 관한규정 제 25 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2.21
 서울특별시장

가. 시장 결정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용산시장	한강로 3가 15-3	22,555		
"	신성시장	중곡동 79-13	2,361.8		
기정	대왕코저	동대문구 전농동 591-50	6,022	1층 5,451 2층 5,336 지하1층 5,375	
변경	동문백화점	"	5,136.8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45 호 도시계획(재개발지구) 일부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제 368 호(73.9.6 및 건설부 고시 제 46 호(76.4.7)로 결정된 도시계획 재개발지구(무교 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 시계획법 제 12 조, 동법제 13 조와 행			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 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74 호(76.11.2)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2.21 서울특별시장		
○ 무교 재개발 지구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조서					
당 초			변 경		
지구명	위치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
무교제 1 지구	무교동 69 일대	1,703	무교제 1 지구	화 동	1,703
" 제 2 "	" 77 "	1,663	" 제 2 "	"	1,663
" 제 3 "	" 59 "	3,270	" 제 3 "	"	3,270
" 제 4 "	" 45 "	2,633	" 제 4, 5 "	[무교동 45 " 40]	4,065

당 초		변 경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무교제 5지구 무교동 40 일대	1,432	-	-
" 제 6 " " 28 "	3,366	무교제 6 지구 좌 등	3,366
" 제 7 " " 1-3 "	1,188	" 제 7 " "	1,188
" 제 8 " " 10 "	1,062	" 제 8 " "	1,062
" 제 9 " " 12-1 "	1,465	" 제 9 " "	1,465
" 제 10 " " 17 "	1,525	" 제 10 " "	1,525
" 제 11 " " 20 "	1,940	" 제 11 " "	1,940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6 호
 동침사 위치변경고시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고시합니다.
 1976.12.22

서울특별시 일부 동침사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강 구자출
 다 음

동 명	위 치 변 경 내 용		이전일자	비고
	이 전 전	이 전 후		
종 로 구 승인제 2 동	종로구 창신동 328	종로구 승인동 242-7	76.12.22	
종 로 구 이 화 동	종로구 연경동 201-3	종로구 이화동 149-1	76.12.22	
영 등 포 구 오류제 2 동	영등포구 오류동 117-69	영등포구 오류동 172-67	76.12.23	
서 대 문 구 연회제 3 동	서대문구 연회동 76-15	서대문구 연회3동 산 4의 32	76.12.30	

서울특별시고시제 34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198 호 (71.4.7) 로 시설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 21 호 (72.9.11) 로 지적 승인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 도로 대로 2 류 41 호 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12.22

서울특별시 장

○ 로선 일부 변경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2	41	30 m	9,000m	양하교	개화동시계	
변경	"	"	"	"	"	"	"	가양동 268-3 개화동시계 연장 4,400 m

◎ 서울특별시고시제 348 호

도시계획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 제 169 호(' 76.10 2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바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량진동 소재 옥실묘지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이를 증명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녹지국 농원과의 관악구청 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2.22

서울특별시 장

— 다 음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량진동 158 번지 175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옥실묘지공원

3. 면 적 : 14,921 평 (49,328㎡)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전분 : 별첨

6.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7.-1978

7. 공사실제도면 : 별첨

8. 공원내 시설조서

시설구분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	면 적		비 고
		㎡	평	
기반시설	25.8%	12,800	3,872	
사적시설	25.5%	12,640	3,824	
부대시설	0.5%	200	60	
자연녹지	48.2%	23,688	7,165	
계	100%	49,328	14,921	

◎ 서울특별시고시제 349 호
 동청사 위치변경고시
 서울특별시 일부 동청사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기 고시함
 기다. 1976.12.23
 서울특별시 장 구자춘

동 명	위 치 변 경 내 용		이 전 일 자
	이 전 전	이 전 후	
종 로 구 종로 2 가 동	종로구 인사동 44	종로구 종로 2가 39-2	76.12.18
은 평 출 장 소 불광 제 1 동	서대문구 불광동 274-19	서대문구 불광동 280의 792	76.12.28

◎ 서울특별시고시제 350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5호 (76.9.5) 로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세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6.12.27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산 50의 1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신 경여자고등학교
3. 면적 및 규모 : 4,200 ㎡
4.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 103의 1호 학교법인선덕학원이사장 이윤성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77.2.28
6.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별첨 (도면 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51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행정 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규정 제25조의 의거 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상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12.28

서울특별시장

○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마포구 망원동 467-3	1101.8평	경성여객
〃	서대문구 북가좌동 227-1	515.6평	서부운수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0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324 호(76.11.30)로 고시된 홍농국교-삼육국교간 도로포장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7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와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별도 개별통지 할 것이니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6.12.13

서울특별시장

<p>공 략 개 요</p> <p>1. 사업장 위치 : 청량리동 206의 11-206의 21</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홍농국교 - 삼 육국교간 도로 포장공사</p> <p>3. 사업의 규모 : 가. B = 6 m 나. L = 330 m A = 19.84</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11.25 -77.12.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 성명 :</p>
---	---

수 용 토 지 지 번 조 서

순위	당 초 지 번	수 용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청량리 206-21	청량리 206-21	대	4		이왕직 장관	국유
2	" 206-26	" 206-26	"	5		"	"
3	" 206-23	" 206-23	"	11		"	"
4	" 206-22	" 206-22	"	47		"	"
5	" 206-34	" 206-34	"	4		"	"
6	" 산 1-155	" 산 1-155	임	133	중구동 14-26	대림산업(주)	
7	" 산 1-169	" 산 1-169	"	32		이 완 직	"
8	" 산 1-136	" 산 1-136	"	33		국 유 지	"
9	" 산 1-172	" 산 1-172	"	16		이 왕 직 장 관	"

◎서울특별시공고 제 30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자
지 정 승 인

- 1. 서울특별시고시제 282 호 (76. 10. 29)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일부 변경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3 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 2. 관계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도시계획과와 은평출장소 시민봉사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리국 관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2. 14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불광동 173외 16필지
- 2. 사업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불광중학교

3. 사업시행면적 : 3,424.8 ㎡
(1,036 평)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기간

가. 착공년월일 : 사업실시계획인가일
...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 개월

6. 위치및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은평출장소 및 교육위원회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공고 제 306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1. 청량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2.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할 것이나 미수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가류한다.

1976.12.

서울특별시

환지계획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청량리 토지구획정리사업
- 2. 변경면적 : 1,305 평
- 3. 변경위치 : 동대문구청량리동 51번지의 14 필지 (19 구획)

◎ 서울특별시공고제 307 호

동업자조합설립인가

식품위생법 제 40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식품영업판매업조합

을 설립인가하고 그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6.12.16

서울특별시

- 1. 인가번호 : 제 4 호
- 2. 인가년월일 : 76.12.16
- 3. 명칭 : 서울특별시식품영업판매업조합
- 4. 대표자 : 김주범
- 5. 소재지 :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 12-6
- 6. 목적 : 식품위생법에 의한 당국의 제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7. 임원

직 위	성 명	주 소
조합장	김주범	시내 서대문구 창천동 30-15
부조합장	조동현	동대문구 회기동 62-10
사무이사	안충만	성동구 용봉동 산 26
이 사	임한경	관악구 노량진동 58-25
"	박남석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3
"	박기호	성동구 구의동 146
감 사	유창	성동구 행당 3동 342-55
"	박일	성동구 하왕십리 산 3

◎서울특별시공고제 309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
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송인구역등 16개 구역)

1. 건설부고시제 145호(74.5.13)
제 280호(74.8.21), 제 294호
(74.8.30), 제 18호(75.2.8)
제 136호(75.8.25) 및 서고시
제 213호(76.9.4)로 주택개량
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된
송인구역등 16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5조에 의거 실시계
획인가내용을 변경코자 동법제 34

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에게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
며 재개발사업구역안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는 이 공고로 가름
한다.

1976.12.17

서울특별시장

공람내용

가. 사업시행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송 인 구 역	송인동 58번지일대	57,901㎡	기간연기
금호제 2 구역	금호동산 7 및 용봉동산 7 번지일대	123,880㎡	사업계획변경및기간연기
돈암제 3 구역	돈암동 6, 9, 11, 80 번지일대	267,684㎡	"
북아현제 2 구역	북아현동 113 및 충정로산 6	14,989㎡	기간연기
서빙고제 1 구역	서빙고동 187 의 2 번지일대	11,828㎡	"
교 처 구 역	교처동 62 번지일대	28,810㎡	"
옥수제 6 구역	옥수동산 1, 2 번지일대	78,397㎡	"
한남제 1 구역	한남동 726 번지	38,258㎡	"

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면목제 1구역	면목동산 78 번지일대	23,293	사업계획변경및기간연거
면목제 2구역	면목동산 72 번지일대	13,878	"
금호제 1구역	금호동산 37 행당동산 30 번지일대	165,697	"
금호제 3구역	금호동산 2, 9 번지일대	71,243	"
금호제 4구역	금호동산 15-1 산 15-4	49,795	"
옥수제 1구역	옥수동 424 번지일대	64,466	"
옥수제 2구역	옥수동 424 번지 산 5 번지일대	103,399	"
옥수제 5구역	옥수동산 6 번지일대	37,488	"
계	16 개 구 역	1,149,006	"

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당초 : 인가일로부터 2 개년
 변경 : 인가일로부터 80.12.30까지
 라. 설계 도서 및 재원 조서 : 생략 (별첨)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 생략 (별첨)
 바. 관계인의 주소성명 : 생략 (별첨)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0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대체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
 체 지정요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를 다음과 같
 이 대체 지정하였기 동요령 제 4 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6년 12월
 서울특별시 장

대체지정업체 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업체명	가림기업사	신안섬유산업(주)	생산제품	세-타	과 동
대표자	이 정 순	대표이사 이 정 순	지정번호	1102	과 동
소재지	관악노량진동 24-15	과 동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3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영동제2지구및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일부토지에 대해서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55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정비국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3.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76.12.17

서울특별시장

- 공 략 개 요 -

1. 사업명 : 영동제2지구2공구및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75-1외 23 필지

서울특별시관악구방배동 238외 8필지

3. 변경조서및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도시성비국구획정리과및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4 호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

공립초, 중, 고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

가. 연 령

1) 60세이상

2) 신체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세이상

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 경력 등산)

- 1) 30년이상
- 2)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이상
 - (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자
 - (나) 재직중 각급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자
 - (다) 재직중 도단위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자

2. 수당지급일 : 1977년 2월 28일

3. 신청기간 : 1977년 1월 21일 - 1월 30일 (10일간)

4. 신청절차

소정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감독청을 거쳐 시, 도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 316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
지정공고

-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추가, 시흥경인, 화양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

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공고제 285호(76.11.25)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55조 및 동법제 43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동법제 56조에 따라 환지에정지를 지정하였기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조서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서 갈음한다.

1976.1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317호

태평로 2가제 2지구재개발사업
완료공고

건설부고시제 204호 (74.6.28) 로
 실시계획인가된 태평로 2가 제 2지
 구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
 획법제 46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6.12.23

서울특별시강인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중구태평
 로 2가 250 일대 및 서소문동
 116-3
- 2. 사업명 : 태평로 2가 제 2지구
 재개발사업
- 3. 인가년월일 및 번호 :
 1974.6.28 건설부고시
 제 204 호

4. 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2가 250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원 중 훈

5. 준공면적 : 2,459.5 평

6. 준공내역 : 별첨조서 및 현황측량도

7.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 지번 및 면적 :
 별첨조서 및 현황측량도

8. 기타 관계도서들 당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와 동방생명보험 주식
 회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준공내역조서

구분	인가사항	준공사항	증 감	비 고
대지	1,999.0 평	1,993.6 평	증 3.6	실시계획안기 지적공부 미등록 부문의 부정확한 계산 등에 의함.
도로	436.0	465.9	증 29.9	
계	2,426.0	2,459.5	증 33.5	

분양받을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 지번, 면적조사

가. 토 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중전소유자	분양자	비고	
건	태평로2가	250	대	731.5	태평로2가250 동방생명보험(주)	과 동		
	"	277	"	839.3			"	"
	"	229-1	"	244.1			"	"
	"	300-2	"	4.8			"	"
	소 계						1,819.7	
부	태평로2가	260-2	대	5.0	국	"	도시계획법제 87 조제 2항해당지	
	"	273-2	"	1.7	"	"	"	
	"	270-9	"	2.5	국	"	도시계획법제 83 조제 2항해당지	
	"	270-8	"	1.0	국	"	"	
	"	270-3	도로	9.5	"	"	"	
	"	267-1	"	1.3	"	"	"	
	"	290-1	"	8.2	국	"	"	
	소 계				29.2	"	"	
지	태평로2가	272-1	"	79.6	서울특별시	"	"	
	"	272-4	"	4.5	"	"	"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종전소유자	분양자	비 고
건 물 부 지	태평로2가	272-6	도로	6.3 ^평	서울특별시	태평로2가250 동방생명보험(주)	도시계획법제83 조제2항제당지
	"	231-2	"	0.8	"	"	"
	"	231-3	"	0.7	"	"	"
	"	231-4	"	52.8	"	"	"
	소	계		144.7			
합	계		1,993.6				
도 로 부 지	태평로2가	229-2	대	119.5	태평로2가250 동방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	"
	"	277-2	"	0.5	"	"	"
	"	277-3	"	7.3	"	"	"
	"	277-4	"	21.8	"	"	"
	"	277-5	"	59.6	"	"	"
	"	251-2	"	8.3	"	"	"
	"	251-3	"	14.8	"	"	"
	"	251-4	"	11.8	"	"	"
	"	251-5	"	2.4	"	"	"
	"	300-3	"	15.8	"	"	"
	"	239-2	"	60.4	"	"	"
	"	228-1	도로	62.6	"	"	"
	소	계		304.8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중전소유자	분양자	비고
도	태평로 2가	290-6	도로	3.1	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83조제2항해당지
	"	267-3	"	0.7	"	"	"
	"	242-1	대	1.2	"	"	"
	"	242	"	17.6	"	"	"
	"	241-2	"	1.0	"	"	"
	"	280-5	"	3.6	"	"	"
로	소	계		27.2			
부	태평로 2가	280-4	대	0.4	서울특별시	"	
	"	272-5	도로	2.4	"	"	
	"	272-7	"	7.2	"	"	
	"	272-8	"	6.3	"	"	
	"	272-10	"	1.0	"	"	
	"	272-11	"	3.4	"	"	
	"	231-5	"	31.7	"	"	
	"	서소문동	116-3	"	1.5	"	"
계	소	계		53.9			
합				계	466.9		
총				합	계	2,459.5	

<p>나. 건 물</p> <p>동양생명보험(주)에서 단독으로 투자시행으로 건축하였으므로 시행자 이외에 분양 대상이 없음.</p> <p>* 건 물 내 역</p> <p>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 가 250 외 16 필지 지상</p>	<p>층 수 : 지하 4 층 , 지상 26 층 , 옥탑 2 층</p> <p>건축면적 : 3,927.25 ㎡ (1,187.983 평)</p> <p>연 면 적 : 83,360.00 ㎡ (25,216,286 평)</p> <p>구 조 : 철골 , 철근 콘크리트조</p> <p>기 타 : 부대시설</p>
---	--

다. 공공시설(도로) 명세 및 귀속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구 분	관리 및 귀 속 청
중로	3	82	12 ㎡	96 ㎡	광로 4호	태평로 2 가 242	신 설 아스팔트 포장	서울특별시
소로	2	1	8 ㎡	51 ㎡	"	서소문동 116 - 3	신 설 폭= 4 미터 확보 콘크리트포장	"
소로	4	1	4 ㎡	79 ㎡	소 로 2류1	태평로 2 가 251 - 4	기존새도일부확장 콘크리트 포장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8호

환지계획 일부변경인가 및
예정지 지정 공고

1. 영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 위치 변경과 공공용지 확보등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 사유가 있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 299호

(76.12.4)로 환지계획 변경공립공고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조 및 제 5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하엿기 공고합니다.

2. 환지에정지 변경 도서는 당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공고사항을 서면 송달받았거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6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장

- 환지 계획 변경 내역 -
가. 사업명 : 영동(제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16,044.1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26의 2호의 35필지 (764-766,788-789, 792,793,805,806,808구획)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0 호

77년도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실시공고

1. 시험실시구분

운전면허		응시원서접수기간	학과시험실시일정			응시장소	
종별	구분						
제1종	대형	시험일 10일전	2.2	6.14	10.18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한남동 소재)	
		부터 근무시간에	3.16	7.19	11.16		
		한하여 응시원서를	4.19	8.17	12.13		
		접수함.	5.17	9.13			
	보통			2.8	6.21	10.26	
				3.22	7.26	11.22	
				4.26	8.23	12.20	
				5.24	9.20		
	특수			1.25	5.3	9.1	
					6.1	10.5	
				3.3	7.5	11.2	
				4.6	8.2	12.6	

운전면허		응시원서접수기간	학과시험실시일정			응시장소
종별	구분					
제 2 종	보통	시험일 10일전 부터 근무시간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함	1.18	5.10	9.6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한 남동 소재)
	소형	.	3.29	8.13	.	
	원동기 차량 자전거	매일 접수	5.14	11.29	매일 실시	
<p>2. 시험안내</p> <p>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793 ~ 7719, 794 ~ 6592)</p> <p>1976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승</p> <p>◎ 서울특별시공고제 821호</p> <p>불량공산물 판매 진열 금지 및 수거명령</p> <p>공산물 품질관리법 제 6조 제 2항</p>			<p>및 제 3항과 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불량공 산물에 대하여 판매 진열금지 및 수 거명령 처분하였기 이에 공고한다.</p> <p>1. 해당업체별 기준머달 내용</p> <p>가. 성능불합격품 및 제조업체</p>			
제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제품명	불합격 항목		
대일화학공업사	분배동 6가 38	박수용	접착비닐테이프	내전압		
연화화학공업사	형수 2가 277-59	백효영	.	.		
제일화학공업(주)	중구산림동 243	심상화	.	신장율, 내전압, 건이		
대원 테이프	상도 1동 122-6	이기원	.	두께, 빗겨짐, 신장율,		
유일화학공업사	종로장사동 156	.	.	건이, 록		
태양산업사	종로예지동 67	.	.	내전압, 빗겨짐		
대일산업(주)	을지 4가 310-68	.	면고무테이프	접착력, 건이		
태양산업사	종로예지동 67	.	고무테이프	접착력, 인장, 신이		

나. 표시사항위반제품 및 제조업체

제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제품명	표시사항위반내용
대일화학공업사	문래동 6가 38	박수웅	접착비닐테이프	명칭, 제조년월일
연화	성수동 2가 27-59	배효영	"	명칭
제일	중구산림동 243	심상화	"	명칭, 제조년월일
유일화학	화종로장사동 156	"	"	명칭, 치수, 제조년월일
대원테이프	상도1동 122-6	이기원	"	명칭, 제조년월일
태양산업사	종로예지동 67	"	"	"
대일실업(주)	윤자로 4가 10-68	"	면테이프	"
태양산업사	종로예지동 67	"	고무테이프	제조년월일

2. 수거기간 : 77.1.28 까지

3. 판매진열금지 및 수거명령일 : 1976.12.23

4. 처분사유 : 공산품검사기준미달

1976.12.23

서울특별시장